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791

발의연월일: 2020. 10. 30.

발 의 자:김교흥ㆍ이성만ㆍ정일영

김병욱 • 허종식 • 김회재

한병도 • 박찬대 • 유동수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 대상이 사업시행자로 한정되어 있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신탁자)에서 신탁업자(수탁자)로이전된 이후에는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감면 특례를 적용할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담

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시행자로 본다)"로,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재산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 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 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 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 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 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

1. • 2. (생략) ② ~ ⑧ (생 략)

징한다.

개 정 아

지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 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신 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탁 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 융기관을 시행자로 본다)---------사업시행자(사업시 행자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 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 영하는 금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본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